

K-IFRS 시행에 따른 우리나라 외부회계감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락인*

A Study on An Improvement Scheme of the External Auditing System by Enforcing K-IFRS

Rack-In Choi *

요약

본 연구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K-IFRS하에서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및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IFRS도입 이후의 국제회계환경에 맞는 회계감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GAAP에서 지적되는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업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책임성 결여, 범법행위 미인식과 독립성 결여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인의 직무수행의 자질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관행화된 감사인 수입제도를 자유수입제와 지정제를 차별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외이사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인은 시험제도의 개선 측면에서 감사의 품질을 위해 공인회계사 수를 늘리고 감사보수료도 감사투입시간 만큼 늘려야 한다. 다섯째,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주식의 보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여섯째, 외부감사인의 감리를 위한 인원을 확충하고, 감리비용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협상 결과에 따른 회계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해외 회계법인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당분간 제한하여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

▶ Keywords :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 일반회계원칙, 외부회계감사제도, 자유수입제, 공인회계사, 외부감사인

Abstract

This study searches an improvement scheme of auditing on international financial environment since enforcing IFRS in order to secur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in corporate accounting and credibility in external audit from 2011 K-IFRS. As improvement schemes for the issue of the audit on K-GAAP are: First, the guarantee of the auditor's qualities of duties and talents about the lack of accountability and awareness and independence of auditor are needed. Secondly, the free acceptance or certified public accountant is adopted. Third, the non-Executive Director shall be granted. Fourth, the external auditor

•제1저자 : 최락인

•투고일 : 2014. 11. 15, 심사일 : 2014. 11. 30, 게재확정일 : 2014. 12. 10.

* 성결대학교 지역사회과학부(Dept. of Community Science, Sungkyul University)

CPA and Auditor's remuneration should be increased. Fifth, the auditor's shares shall be limited. Sixth, the external audit to supervise and the ratio of supervision should increase. Finally, the foreign corporation for the time being limited to increase our competitiveness.

▶ Keywords : K-IFRS, K-GAAP, External Auditing System, Free Acceptanc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External Auditor

I. 서 론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해운회사 및 계열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한 여러 계열사의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D 회계법인, N회계법인, C회계법인, S공인회계사감사반 등으로 밝혀졌는데, 금융감독원은 4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마친 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질차를 거쳐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기업은 이해관계자들에게 회계에 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회계정보를 통해 기업과의 투자, 금융 등 이해관계를 맺게 된다[1]. 따라서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는 회계정보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계정보 공시의 주체인 기업이 정보를 왜곡하거나 기업의 실체를 과대평가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의 행태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담당하는 역할이 감사(audit)이다[2].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 재무회계에 대한 투명한 회계감사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문제는 좁게는 회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경제 전체의 펀더멘털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정보전달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회계정보인데 이러한 회계정보가 흔들린다면 시장에 미치는 타격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고 있는 회계환경에서 현행 우리나라 회계감사 중에서 외부회계감사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신뢰성 상실의 요인과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변천과정과 관련 연구와의 차별성

1. K-IFRS의 시행 배경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와 발맞추어 자본시장이 글로벌화 되면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도입을 위한 세계 각국의 회계전문단체들이 협력하여 순수 민간단체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을 설립하였다.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은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세계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국제회계기준이 각국의 회계기준에 널리 반영되고 있다. EU 25개 회원국들은 상장기업에 대해 2005년부터 IFRS를 채택하였고, 현재는 우리나라, 중국, 호주 등 전 세계 150여 개국이 IFRS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자본시장의 큰 축인 미국과 일본은 그동안 독자적인 회계기준을 고수하며 자국의 회계기준과 IFRS간 불합치성 해소를 도입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시행을 미루다가, 올 해부터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IFRS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회계 선진화를 위해 회계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성과를 나타내는 기초언어라 할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이 국제회계기준과 달라 외국인 투자자 등이 한국기업의 회계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아 온 '회계기준 미흡'원인을 제거하여 회계정보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 국내기업들의 해외증시 상장 시 회계기준 상이로 인한 회계장부 이중 작성의 부담 등의 문제점도 경감하기 위해 IFRS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¹⁾ 그리하여 상장법인과 금융기관 등에 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2007년 3월 15일 IFRS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2009년도부터는 자발적 판단에 따라 K-IFRS를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1년부터 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K-IFRS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기업의 공시제도가 개별재무제표 중심에서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다.²⁾

IFRS는 전 세계 기업들의 회계정보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작성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 세계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서로 비교가 쉬워지며 투명한 회계정보를 얻는 데에 도움이 된다.

표 1. 국제회계기준과 기존의 우리 회계기준의 차이
Table 1. Differences of K-IFRS and K-GAAP

항 목	K-IFRS	K-GAAP ³⁾
공시체계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정책적 목적에 따른 기준의 차이	거래에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방법을 규정	일부 항목에 대해 규정
자산, 부채의 평가방법 차이	공정가치 평가	취득원가 평가
재무제표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 자본변동표 • 주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현금흐름표 • 자본변동표 • 주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회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받게 되므로 회계정보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기업의 입장에서 시장가치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며 자본조달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2. 회계감사의 기본 개념

미국회계학회(AAA)의 회계감사기본개념위원회(Committee on Basic Auditing Concept)는 감사의 기초개념보고서(A Statement of Basic Auditing Concepts: ASOBAC)에서 '감사란 경제활동 및 사상에 관한 주장에 대해 미리 설정된 평가기준과의 일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 주장에 관한 증거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해관계가 있는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한다(3). 엘더 등(R. Elder et al)은 기본적으로 ASOBAC과 뜻을 같이 하고 있으나 감사주체 및 감사대상을 재무보고 중심으로 보다 구체화시켜 '감사란 자질을 갖춘 독립적인 제3자가 어떤 정보에 대하여 미리 설정된 일정한 평가기준과의 일치 정도를 결정하고 보고할 목적으로 그 정보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절차'라고 정의하고 있다(4). 이러한 정의를 근거로 회계감사(auditing)란 기업에서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안심하고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회계정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정보의 작성자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제3자인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1972년 12월 30일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되었다.

표 2. 외국의 법정 외부감사 대상기준
Table 2. The Legal Foreign Standard of External Audit

국가	외부감사 대상기준
미국	- 상장회사 - 비상장회사 중 자산총액 100만 달러(14억 원) 이상, 주주 500인 이상인 장외등록법인
일본	- 자본금 5억 엔(48억 원) 이상 또는 부채총계 200억 엔(1,920억 원) 이상 주식회사
영국	- 모든 회사 단, 자산·매출액·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정한 소회사(자산 280만파운드(57억 원) 이하, 매출액 560만 파운드(114억 원), 종업원수 50인 이하)가 아닌 회사
독일	- 모든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합자회사. 단, 자산·매출액·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정한 소회사(자산 401.5만유로(64억 원) 이하, 매출액 803만 유로(129억 원) 이하, 종업원 수 50인 이하)가 아닌 회사
싱가포르	- 모든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단, 휴면회사 또는 종업원수·수익 기준으로 정한 감사면제회사(종업원수 20인 이하 & 수익 5백만 싱가포르달러(38억 원) 이하)가 아닌 회사

이법의 시행에 의해 많은 기업들은 감사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내부감사제도의 실효성이 결여되었다. 또한 재무구조가 취약하며 분식회계 등이 만연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80년 12월 31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 제정되었다. 제정당시 자본금 5억원 또는 자산총액 3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외부감사의무를 시행하였다.⁴⁾ 이후 경제성장에 따라 주식회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의 기준이 2009년

1)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 국내 도입배경'
2)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2010.11, 대한민국정부
3) 기준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 GAAP)

초에 개정되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감법'에 의하여 외부 감사 대상기준이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 추가적으로 부채총액이 70억 원 자산총액이 70억 원,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인 주식회사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선진외국의 경우에는 감사대상기준은 부채비율, 소액주주를 고려한 주주 수, 외부 거래고객을 고려한 매출액 규모, 그리고 사내 근로자를 고려한 임직원 수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기준으로 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감사는 감사를 행하는 기본 목적에 따라 재무제표감사, 업무감사, 이행감사, 포괄감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감법'에서 말하는 감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말한다.

재무제표의 감사와 관련된 기구로는 첫째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이들은 회계감사기준에 대한 제(개)정, 감사인의 변경 명령 및 지명, 감사보고서의 감리, 감사인의 조직에 대한 평가 등을 행하며, 연간 60-150개사를 감리한다. 감사 결과 지적비율 약45%, 일반감리는 약 25%에 해당한다. 둘째 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위탁감리를 실시한다. 이는 연간 250-350개사로 약13%에 해당한다. 셋째 회계법인과 감사반으로 회계법인은 10인, 감사반은 3인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표 3. 감사의 종류
Table 3. Kind of Audit

구분	재무제표감사	업무감사	이행감사
감사목적	재무제표의 적정성	업무의 능률과 효과	법규, 규정의 이행
평가기준	기업회계기준	효율성, 능률성	법규, 규정의 이행
감사인	공인회계사	내부감사인	외부, 내부감사인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감사인의 자질은 첫째 적격성을 들 수 있다. 감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 즉 회계 및 관련 학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독립성이다. 감사인은 피감사인으로 부터 경제적 이해관계에 예측되거나 신분적인 관련성을 가지면 안 된다. 셋째 신의성실성이다. 감사인은 전문직업인으로서 마땅히 기술하여야 할 '정당한 주의'(due professional care)를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감사를 통해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회계감사를 완료한 후에 수

집된 감사증거를 기초로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보고서를 말하며, 감사의견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이 있다.

표 4. 감사의견의 분류
Table 4. Classification of Auditing Views

구분	기법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독립성의 결여	의견거절	의견거절	의견거절
감사범위의 제한	적정	한정	의견거절
의견의 불일치	적정	한정	부적정
기업존속 가능성	적정	한정	의견거절

3.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변천과정

국가의 경제활동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감사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배경과 변천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체로 감사제도의 발달과정을 다섯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그 특징과 기술의 변천과정은 표 5와 같다.

첫째, 1500년대 이전 시기는 회계제도의 생성과 감사 기능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1850년대까지는 산업혁명 이전 시기로 조직적인 감사제도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근대적 감사 기능이 존재하던 시기이다.

표 5. 감사목적 및 감사제도의 변천
Table 5. Audit Purpose and Transition of Auditing System

시대	감사목적	감사기법	주이용자
1500년대 이전	개인의 정직성, 성실성	모든 항목 정밀조사	왕궁, 시정기관
1500년대 ~ 1850년대	부정적발, 수탁책임 이행여부 확인	모든 항목 정밀조사	소유주
1850년대 ~ 1900년대	부정, 오류 적발, 업무상태 확인	대부분 정사, 일부 시사	주주, 채권자
1900년대 ~ 1930년대	재무상태 및 수익성 확인	정사와 시사 병행	주주, 채권자, 정부기관
1930년대 이후	재무제표의 적정성	표본조사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셋째, 산업혁명 이후부터 1900년대까지로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던 시기로 감사제도의 독립적인 기능이 대두되던 시기이다. 이때는 세계경제의 주류가 미국으로 옮겨 가면서 감사제도 또한 미국 중심의 발달시기이다. 넷째, 190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시기는 세계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이전까지 단계로 독립된 감사인에 의한 감사와 인증기능이 나타난 시기이다. 다섯째, 1930년대 이후시기로 이때 현대적 감사방법이 생성되었으며 학문적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현재는 2005년 이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IFRS는 규정중심(Rule-Based)의 회계처리에서 원칙중심(Principal-Based)적인 회계처리로 변화함에 따라 세계 자본시장의 참여자 및 기타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재무제표와 기타 재무보고에 있어 고품질, 투명성, 비교가능성을 갖춘 이해가능하고 강제성 있는 단일의 국제회계기준의 이용 및 엄격한 적용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IFRS에서는 원칙적으로 종속회사가 있는 모든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를 작성하여야 한다.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은 기본으로 함으로써,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등 기업의 공시제도가 개별재무제표 중심에서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또한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태 및 내재가치에 대한 의미 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제회계기준은 금융자산·부채와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까지 공정가치 측정(fair value accounting)을 의무화 또는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회계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IMF 경제위기 이후 IFRS를 채택하면서 감사전문직도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 변화에 대한 측면을 열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대기업 그룹의 연쇄적인 부실화와 이에 따른 부실감사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둘째, 시장이 회계와 감사의 중요성을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셋째, 회계감사의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압력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다. 넷째, 외부감사인에 대한 시장과 규제기관의 압력이 엄청나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부실감사의 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섯째, 공인회계사업계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일곱째,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여덟째, 공인회계사 업무에 대한 수요와 함께 공인회계사의 공급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홉째, 국제회계기준과 같이 회계감사기준의 글로벌 스탠다드화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전문직이 이러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때는 시장개방을 통한 외부의 압력을 통하여 감사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지난 1997년 IMF를 겪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기업의

구조조정,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세계무역기구(WTO)의 출현에 따른 무역개방, 그리고 한미 FTA를 시작으로 EU, 중국과의 FTA의 체결로 자본시장의 세계화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효율적인 자본조달시장으로서, 또한 일반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시장으로서 크게 성장,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기업공개와 관련된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와 불법행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와 공개상장법인의 감사에 있어서의 부실감사 등이 크게 문제화되어 우리나라 회계감사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회계감사제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IFRS에 발맞추어 나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회계감사제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성삼(1996)은 선진각국의 회계감사제도를 감사의 주체가 되는 감사인인 공인회계사의 자격(취득)시험제도와 회계법인을 위시한 감사인의 조직을 중심으로 연구, 검토하여 우리나라 회계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우리나라 회계감사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연구하였으며(5), 이상수(2002)는 외부감사제도의 개선 중 감사인의 독립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감사인의 보수 자유화, 감사인선임위원회제도, 연속감사제도의 유지 등에 초점을 두고 감사인의 보수 자유화, 감사인선임위원회제도, 연속감사제도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6). 노태일 외(2006)는 사학법인의 외부회계감사제도의 활성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회계정보의 필요성과 신뢰정도는 이해관계자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한 기준을 재개정하거나 제도적 장치로 감리제도나 감사위원회 등 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7). 이명곤 외(2008)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용성을 감사인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업무가 감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초기에 제도의 유용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며, 또한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제도적, 실무적 문제점을 조망함으로써 추후 제도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8). 김광운(2008)은 최근 회계산업계에서 현안 이슈가 되고 있는 외부감사법령의 개정안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통해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여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명성을 대폭 올려야 하고,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 상향조정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9). 이재은(2010)은 개정회계기준 적용 시 회계변경 관련 회계오류 발생과 기업의 내부통제 및 외부감사인 기능의

관련성에 대하여 실증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새로운 회계기준의 시행과정에서 기업의 결산 능력 제고를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10). 김문철 외(2011)는 우리나라의 품질관리감리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회계법인에게 품질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는 감사인등록제도의 미비, 품질관리감리의 운영과 관련된 제도의 미비 및 품질관리감리의 실효성확보장치의 미비 등이라고 제시하고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회계법인에 대하여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의무화할 수 있는 상장기업감사인 등록제도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준거기준이 되는 품질관리기준의 적용을 법제화해야 하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 품질관리시스템 또는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되어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11). 김동욱 외(2013)는 벤포드 법칙을 이용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비상장기업의 자산 및 부채총액을 표본으로 하여 첫 두 자리 수가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 확인하였고, 또한 그 분포가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특정 숫자 부근에서의 분포인지 주목하여 외부감사 대상기준인 부채총액기준 70억 원이 적용되는 2010년은 직전연도인 2009년과 달리 첫 두 자리 수 '70' 직전에 빈도수가 집중적으로 많이 관찰되어, 부채총액 외부감사 대상기준 적용에 따른 부채수치의 의도적 조정의 외부감사 회피행태가 있음도 확인하였다(12). 홍기용 외(2013)는 세원투명성을 높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동시에 숨어있던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외부회계감사를 자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해외 입법례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13).

2011년부터 IFRS의 채택·시행으로 감사대상회사가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 재무제표가 개별회사의 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됨에 따라 개별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공정가치 평가의 증가, 회사의 회계처리 방침을 포함한 주석 작성량의 증가 및 분·반기 재무제표의 공시 및 재무제표 공시 기간의 단축 등 우리나라 외부회계감사제도의 환경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 실제로 아직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IFRS 도입과 시행에 따른 우리나라 외부회계감사제도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에는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과 회계인의 개혁의지와 실

천이 뒤따라야 하나 현실적 회계환경에서 다소 제한적일 밖에 없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III. 우리나라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21세기 현대 회계감사의 특징으로는 감사목적의 변화와 감사업무의 확대, 표본감사의 발전, 내부통제제도의 발달과 의존, 전산기법의 개발과 감사이론의 학문적 발달을 들 수 있다. 현대 회계감사는 재무제표 전반에 걸친 재무정보의 적정성과 기업의 상태를 진단하는 전문가의 의견 표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1. 우리나라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는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감사의 유용성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법률적 규정에 의해 요구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9년 이후 기업의 투명성과 회계의 신뢰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인식되었으나 회계실무에서는 여전히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한보, 기아 대우의 분식결산과 부실감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이 극도로 침해된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러한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요인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신뢰성 상실의 요인

회계감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 이유로는 첫째, 분식회계에 대한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내부의 경리임원들은 기업내부의 분식회계에 대해서 약 50%정도만 인지하고 있었으며, 외부감사인들은 그 중 약 20-30% 정도만 인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감사인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인이 감사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는 전문지식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고, 책임의식 또한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감사 자체를 심각한 범법행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셋째, 회계감사제도에 대한 제도 운용이 관주도가 관행이었다.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의 제정이나 감사보수의 결정, 감사 결과에 대한 감리, 그리고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등이 모두 관주도로 진행되어 왔다. 넷째, 과거의 기존 기업회계기준(K-GAAP)이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과

차이가 매우 컸었던 것이다. 현재 K-IFRS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투명하거나 부실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부 회계감사제도의 형식화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2. 수입제도의 미정착과 법적용의 약화

감사수입제도의 미정착과 낮은 감사보수, 감사인 조직 내의 소홀한 질적 관리, 그리고 감사인 책임에 대한 경시 풍조가 아직도 심하게 만연되어 있으며 감사인 간의 감사수입 및 보수료 경쟁에 대한 독립성이 매우 저하되었다. 1980년 이전에는 감사수입이 배정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자유수입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K-IFRS 도입 이후 감사시간은 증가하는 반면,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감사보수는 변화가 없어, 투입 노력의 증가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유수입제에서의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 대해 의뢰인이라는 관계가 잔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분식결산에 대해 처벌규정의 적용이나 투명한 감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1-3. 외부감사인의 선임권한

지금까지 외부감사인을 경영자가 선임하도록 하였다. '의감법'에 의하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 후에는 2주일 내에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선임위원회(1/3 사내이사, 2/3 사외이사로 구성)에서 사외이사들은 대부분 대주주의 영향력에 속하는 인물들로 선출되며, 또한 기업구조상 집행부인 이사회에 하부기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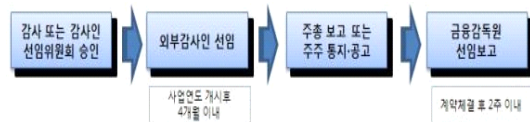


그림 1. 외부 감사인 선임절차⁵⁾
Fig. 1. Election Procedure of External Auditor

1-4. 공인회계사 인원 부족과 감사보수로

현재 우리나라의 감사 투입시간은 미국의 1/10, 감사보수는 1/4 수준이며 감사인원은 최저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감사보수는 시장의 경쟁구도, 계속감사 여부에 따라 적지 않

게 영향을 받지만, O'Keefe et al. (1994) 에서와 같이 감사 시간이 상대적으로 피감사회사의 감사 위험, 난이도, 범위 등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며, Bell et al. (2001) 이 제시한 바와 같이 피감사회사의 감사위험의 크기에 시간당 감사보수는 증가하여야 할 것이다.

1-5. 외부감사인의 주식취득 제한

현행 감사인이 피감사 기업의 발행주식의 1% 미만은 투자가 가능하다. 이를 축소 내지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1-6. 교호감리(peer review)제도의 도입

현행의 금융감독원 및 공인회계사회의 감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미국에는 회계법인이 3만 여개이며 이 중 12,000개가 감사에 참가하여 상호 독립적인 법인 간의 교호감리가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소수의 법인이 존재하고 상호 연계성이 강하므로 교호감리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감리의 강화는 분식결산이 적발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1-7. 외국 회계법인의 우리나라 회계법인 흡수

한미FTA협상 타결로 인하여 회계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향후 국내 BIG5 삼일, 안진, 안건, 산동, 영화회계법인이 해외법인과의 경쟁력 열세로 그들과 제휴할 경우, 해외 제휴사에 내는 보험료는 현재(10억 원 안팎)보다 2~3배가량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일회계법인의 경우 해외제휴사인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 PwC)로부터 한국 PwC"로 간판을 바꿀 것을 요구받고, 현재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영문명을 Samil Price Waterhouse Coopers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회계법인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이전까지는 해외의존도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외부회계감사제도의 개선점

회계감사제도의 변천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회계감사제도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였다. 또한 시대의 변화와 경제 환경의 변화 추세에 따른 향후 지속적 변화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우리나라 외부회계감사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첫째,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된 기업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책임성 결여, 범법행위 미인식과 독립성 결여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인의 직무

5) 자료: 금융감독원

수행의 자질을 보장하고 직무상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독일처럼 외부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될 수 있기 위해서 추가로 자격검증에 대한 참가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14]. 분식결산이 적발된 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외감법' 등의 위반으로 금융 감독 당국이 원칙적으로 형사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결산 관계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고발여부에 관해서는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고의적인 분식결산이 발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분식결산을 묵인한 감사인들도 형사고발하는 것은 물론, 부실감사가 지적된 감사인들에 대한 징계수준도 상향조정하는 법적용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관행화된 감사인 수입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외감법'에서 자유로운 외부감사인의 해임사유를 보다 명확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감사시장구분에 의한 차별적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소 및 코스닥등록 기업은 자유수입제를 '외감법'에 의해 감사를 받는 비상장 주식회사는 감사인 지정제를 채택하여야 한다. 셋째,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원 중 사외이사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의 회계감독기관들은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사전적 품질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이다[15].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제도의 개선 측면에서 감사의 품질을 위해 감사투입시간을 두 배로 늘리고, 이를 위해 공인회계사의 수가 15,000여명 정도 될 때 까지 매년 1,000명 정도의 공인회계사를 선발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보수료도 감사투입시간 만큼 늘려야 한다. 다섯째,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이익과 그를 감시하는 감사인의 책무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구성원이라도 피감사기업에 대한 주식의 보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여섯째, 외부감사인의 감리를 위한 인원을 확충하고, 감리비용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사인 간의 교호감리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충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협상 결과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제외한 회계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해외 회계법인인 한국에서 사무소를 등록 개설하여 회계감사를 제외한 회계재무 컨설팅 및 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당분간 국내 회계법인의 경쟁력이 향상될 때까지 외국회계법인의 국내 진출을 부분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3. 정책적 제언

앞에서 외부회계감사제도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세계화의 거센 물결과 외국과의 FTA체결 등으로 WTO체제 하에서 우리의 기업 활동의 제한과 회계 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K-IFRS 시행에 따라 향후 외부회계제도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앞으로 당면하게 될 문제에 미리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앞으로는 단순한 회계감사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 인수합병(M&A), 기업가치평가, 경영의 효율성 평가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기업 내부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외부회계감사의 한계로 지적되는 기업 내부의 경영 및 회계처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서의 통제 및 간사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내부감사제도의 새로운 기법들이 개발되고 이에 따른 경영상의 책임이나 법적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셋째, 회계의 전산처리시스템의 발달로 전산회계감사기법이 많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미리 예방 차원의 감사가 필요할 것이다. 시업의 집행단계 이전의 사업계획이나 예산과정에서의 감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 및 경영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비용과 효용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감사제도가 도입되고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16]. 마지막으로 회계감사제도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이후 우리나라의 회계시장이 점차 개방되어 해외 전문 감사인이 국내에 적극 진출하고 회계감사 및 경영컨설팅의 국제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추세이다. 회계시장의 개방이 외국 회계법인의 진출로 인한 국내법인의 흡수 및 위축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이를 계기로 국내 전문 감사인의 수준과 서비스의 질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능동적으로 세계화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IV. 결론

기업은 이해관계자들에게 회계에 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회계정보를 통해 기업과의 투자, 금융 등 이해관계를 맺게 된다[17]. 그러나 회계정보 공시의 주체인 기업이 정보를 왜곡하거나 기업의 실체를 과대평가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의 행태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데, 기업 재무회계에 대한 투명한 회계감사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고 있는 회계환경에서 현행 우리나라 회계감사 중에서 외부회계감사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과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업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책임성 및 독립성 보장과 범법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외부회계감사인의 자질 보장을 위한 자격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관행화된 감사인 수입제도를 자유수입제와 지정제를 차별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외이사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인은 시험제도의 개선 측면에서 감사의 품질을 위해 공인회계사 수를 늘리고 감사보수료도 감사투입시간 만큼 늘려야 한다. 다섯째,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주식의 보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여섯째, 외부감사인의 인원을 확충하고, 감리비율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협상 결과에 따른 회계서비스 시장 개방 이후 해외 회계법인의 한국 진출을 당분간 제한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기업의 투명한 회계로 인한 신뢰성 뿐 만 아니라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향후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RackIn Choi(2013), A Schemes of Improving about Accrual Basis Accounts and Bookkeeping by Double Entry for Financial Transparency of Local Governments, Journal of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18(12), 180-183.
- [2] SungKyu Son(2006), Auditing Theory, Seoul, Pakyoungsa, 1-3.
- [3] AAA(1973), Committee on Basic Auditing Concepts, A Statement of Basic Auditing Concepts, Studies in Accounting Research No. 6(Sarasota, Florida : AAA), 2.
- [4] Randal Elder, Mark Beasley, and Alvin Arens(2010), Auditing and Assurance Services, 13th edition,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Inc., 4.
- [5] SungSam Ko(1996),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uditing System in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2(1), 43-45.
- [6] SangSoo Lee(2002), Some Audit Related Statutes Revisions and Auditor Independence, Korean Accounting Review, 27(2), 57-59.
- [7] TaeIl Roh, YeonHee Park(2006), An Empirical Study of Private University External Audit System,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15(2), 265-267.
- [8] MyungGon Lee, SeChul Lee, SeokJin Chang.(2008.), The Effects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on Audit Hours and Audit Fees, Journal of Tax and Accounting, 9(2), 73-76.
- [9] KwangYeon Kim(2008), A Critical reflections of Restructuring External Auditing laws, Korean Accounting Review, 2008(1), 2-3.
- [10] JaeEun Lee(2010), "Errors Occurred with Respect to Accounting Standard Changes, and their Association with Internal Control and External Auditor Functions: Experience from the Revised KSAF No. 15 and KAI Opinion 06-2 in Korea," Journal of Accounting and Auditing, Vol. 52, 121-124.
- [11] MoonChul Kim, YoungSook Chun, JinYoung Choe(2011), Suggestions to Improve the Statutory Inspection of Auditing Firms' Quality Control System, Korean Accounting Journal, 20(3), 97-98.
- [12] DongWuk Kim HyeRim Kang.(2013), Change in The Criteria in Selecting Companies Subject to External Audit and Companies' Avoidance Behavior of External Audit, Journal of finance and accounting information,13(3), 99-102.
- [13] KiYong Hong, KapSoon Kim, SeonPyo Lee, Hun Park(2008), Voluntary External Audit and the Transparency of Tax Revenue Source, Korean Accounting Review, 55(2), 451-455.
- [14] Bawnbach, Adolf/Hopf, Klaus (Hrsg.), (2012), Handelsgesetzbuch mit GmbH & Co.,Handelsklauseln, Bank und Börsenrecht,

Transportrecht (ohne Seerecht), Aufl., München, 35.

- [15] E. B. Stats(Summer 1981), "Auditing as We Enter the 21st Century-What New Challenges Will Have to be Met," Auditing-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Vol. 1, 4.
- [16] MoonChul Kim, YoungSook Chun, JinYoung Choe(2011), Suggestions to Improve the Statutory Inspection of Auditing Firms' Quality Control System, Korean Accounting Journal, 20(3), 97-98.
- [17] NamMyun Kim(2000), A Study on Accountants'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the Ethics Development Level, Journal of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5(3), 193.

저 자 소 개



최 락 인

1986: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사
1991 :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
1998 :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 박사
현 재 : 성결대학교
지역사회과학부 교수
관심분야 : 조사방법론, 지방재정
Email : zzangchoi@sungkyul.edu